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숙애 의원 등 7인

##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2년 3월 7일

○ 회부일자 : 2022년 3월 10일

## 3. 제안사유

-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의 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의 정비를 통해 용역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4.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기술용역, 일반용역을 포함함. (안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3조)
  - 기술용역, 일반용역 중 예산 통계목이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경우, 이 조례를 적용토록 규정
- 용역 심의 시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덕항)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에 대한 용역의 관리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용역 심사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용역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 현행 조례에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조를 준용해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용어만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의 범위를 포괄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행정상 조례 적용 범위 결정에 따른 문제 발생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안 제2조(정의)에서는 이들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기술용역 및 전산·임상 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제2항을 신설해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 중 예산 통계목이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 안 제8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현행 조례에서는, 심의 시 이해관계 위원을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관련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관련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용역 심의·의결 시 적용하기에는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별도 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현행	개정안
<p>□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u></li> <li>2. <u>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li> <li>3. <u>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u></li> <li>4. <u>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li> <li>5. <u>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li> </ol> <p>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p>제8조(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해당 심의 안전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u></li> <li>2. <u>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u></li> <li>3. <u>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u></li> </ol> <p>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p>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가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조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용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법적·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쳐 절차상으로도 타당함.

### <참고자료> 정책연구용역 심의현황('20 ~'21)

(단위: 회, 건, 백만원)

구 분	회의개최	심의안건	심의결과			심의 결정액
			원안	조정	유보	
2020	11	54	51	3	-	3,357백만원
2021	9	58	52	4	2	3,786백만원